

1.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문화재수리 기술자가 아닌 것은?

- |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
| ① 실측설계기술자 | ② 표구기술자 |
| ③ 식물보호기술자 | ④ 조경기술자 |

2. <보기>의 조사·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<보기>

『문화재보호법』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조사·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·심의한 것으로 본다.

-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
-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
- ③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④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<보기>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문화재 수리의 종류와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.

<보기>의 ⑦~⑩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?

<보기>

종류	세부공종	책임기간
성곽	목책성 (木柵城: 나무로 둘러 막은 성)	( ⑦ )년
탑·석조물	전탑(磚塔)	( ⑩ )년
목조건축물	건축물의 단청 (벽화, 불화 포함)	( ⑨ )년

⑦      ⑧      ⑨      ⑩

- ① 1      2      3
- ② 1      3      2
- ③ 2      1      3
- ④ 2      3      2

4.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지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그리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.
- ③ 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3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5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 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.
- ② 문화재청장 이외에 시·도지사도 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승자 발굴과 무형문화재 기록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무형문화재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.

6.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,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한다.
- ②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최대 3건이다.
- ③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- ④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야 한다.

7. 금속유물의 보존처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① 녹제거 - 접합 및 복원 - 강화처리 - 방청처리 - 색맞춤
- ② 접합 및 복원 - 녹제거 - 색맞춤 - 방청처리 - 강화처리
- ③ 녹제거 - 방청처리 - 접합 및 복원 - 색맞춤 - 강화처리
- ④ 녹제거 - 방청처리 - 강화처리 - 접합 및 복원 - 색맞춤

8.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문화재수리업자란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- ②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감리업자의 지도·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.
- ③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·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손상 정도·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하는 업무이다.

9. 유물은 재질별 특성 및 상태가 다르므로 유물 이동과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. 유물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유물 취급자는 유물의 포장과 이동 시 진동,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유물을 포장하고 여러 개의 유물은 하나의 보관상자에 보관한다.
- ② 유물 취급자는 유물의 보존상태 및 중요 손상부위에 대한 이력을 먼저 숙지한 후 유물을 다룬다.
- ③ 유물을 옮길 때는 양손을 사용하고 가장자리 또는 손잡이와 같이 약한 부분을 잡고 들지 않도록 한다.
- ④ 유물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장갑을 착용한 경우, 유물을 직접 잡거나 들고 이동할 때에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이동하기도 한다.

10.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상 시·도지사의 관할 구역 세계유산에 대한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 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.
- ③ 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 하여야 한다.
- ④ 문화재청장은 시·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,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11.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.
- ③ 문화재청장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한국문화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문화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역문화재돌봄 센터를 평가해야 한다.

12. <보기>의 ㉠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?

<보기>

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,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 원상 복구 비용 청구 시 훼손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납부금액, 납부기한,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하고,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(㉠)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

- |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|
| ① 30 | ② 60  |
| ③ 90 | ④ 120 |

13. <보기>에서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- ㄱ. 벽화 및 단청이 있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
- ㄴ.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
- ㄷ. 훼손된 불단 일부를 보수하는 행위
- ㄹ.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
- ㅁ. 표지돌, 안내판,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
- ㅂ.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
- ㅅ. 기존의 전기·통신·소방·도난경보·오수·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

-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ㄱ, ㄴ, ㄷ, ㄹ | ② ㄱ, ㄷ, ㄹ, ㅅ |
| ③ ㄴ, ㅁ, ㅂ, ㅅ | ④ ㄹ, ㅁ, ㅂ, ㅅ |

14. <보기>의 ㉠~㉢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짜지은 것은?

<보기>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문화재수리등의 기본 원칙은 문화재수리, 실측설계 또는 (㉠)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(㉡)을/를 사용하여야 하며,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(㉢)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.

- |   | <u>㉠</u> | <u>㉡</u> | <u>㉢</u>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① | 감리       | 기술       | 경관       |
| ② | 감리       | 도구       | 경관       |
| ③ | 보수       | 도구       | 환경       |
| ④ | 보수       | 기술       | 환경       |

15. <보기>의 ⑦과 ⑧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짜지은 것은?

<보기>

『문화재보호법』상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( ㉠ ), ( ㉡ )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.

㉠

㉡

- |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|
| ① 국보 | 문화재 자료  |
| ② 사적 | 국가민속문화재 |
| ③ 보물 | 명승      |
| ④ 사적 | 명승      |

16.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 중 페인트 낙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습포법
- ② 레이저 세정법
- ③ 블라스팅 기법
- ④ 자외선 조사법

17. 『문화재보호법』상 <보기>의 ⑦에 들어갈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서울특별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, 보존·관리 실태,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조사·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( ㉠ )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① 국사편찬위원회
- ② 박물관
- ③ 한국학술진흥재단
- ④ 대학

18. 『문화재보호법』상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므로 문화재청장이나 시·도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.
-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③ 문화재기본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는 것이나, 이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.
- ④ 시·도에는 시·도문화재위원회를 둔다.

19. 문화재보호법령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의 인가·허가 전에 전문가 5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·예술적·학문적·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.
- ③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.
-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20.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-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 받으려는 자는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